

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7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0. 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농지법 제46조 (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)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법에 부합 되게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 변경 (안 제명)
- 위원회의 기능 (안 제4조)
- 농지관리위원 추천 및 위촉 운영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농지법 제36조 (농지전용허가, 협의) 및 동법 제37조 (농지전용신고)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
- 농림부 '98 규제개혁 추진과제중 '99년 3월31일자로 공포 시행이 확정된 법령의 규제 개혁(농지법 제25조 폐지) : 농지법 제25조는 임차료의 상환의 기준을 지역별 농작물 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
- 농지법 시행령 제68조 (위원회 운영)

4. 본 문 : 덧붙임 참조

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 명 : “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”를 “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“농지임대차관리법”을 “농지법 제46조”로 “동법시행령”을 “동법시행령 제68조”로 하고 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 관하여”를 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
2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이용증진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
3.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
4. 농지 및 농지의 소유,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
5.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
6.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
7.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 (위원의 추천 및 위촉) ①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 이장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읍.면장을 정유 군수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3항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

[별표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제1호] 서식중 “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4조” 를 “농지법 제47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명 :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농지임대차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. 2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, 임차료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 3.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. 4.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. 5.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이지 아니하는 대상토지(위토, 종교단체의 소유농지)여부의 확인. 6.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. 7.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(농지의 매개 및 구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)된 업무,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경영규모 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)의 심의 <p>.....</p> <p>.....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.</p>	<p>제명 :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.....<u>농지법제46조(.....).....동법시행령제68조(.....).....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.....</u></p> <p>.....</p> <p>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이용증진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.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. 농지 및 농지의 소유,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5. 영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현인에 관한 확인 6.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. 7.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

현행	개정안
<p>9. 기타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.</p> <p>제6조(위원의 추천 및 위촉)① 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8조(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)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임차료의 상환)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읍. 면별 상환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별지 제1호 서식 내용중 위 사람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읍 면 ○○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후보자로 추천 합니다.</p>	<p>제6조(위원의 추천 및 위촉)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이장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읍. 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</p> <p>② <삭제></p> <p>③ 제1항의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④ 현행과 같음</p> <p>제8조<삭제></p> <p>제11조<삭제></p> <p>별지 제1호 서식농지법 제4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제65조의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<별표 1>

고성군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

구분 읍면	계	읍·면장	농민대표위원 (행정마을)	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(농업협동조합, 농지개량조합,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, 농어촌진흥공사)
계	322	14	252	56
고성읍	35	1	30	4
삼산면	19	1	14	4
하일면	20	1	15	4
하이면	24	1	19	4
상리면	22	1	17	4
대가면	24	1	19	4
영현면	21	1	16	4
영오면	20	1	15	4
개천면	21	1	16	4
구만면	19	1	14	4
회화면	21	1	16	4
마암면	22	1	17	4
동해면	27	1	22	4
거류면	27	1	22	4

(별지 제1호 서식)

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서

임차인대표	1. 성 명 :	2. 주민등록 번 호
	3. 주 소 :	
임대인대표	1. 성 명 :	2. 주민등록 번 호
	3. 주 소 :	

위 사람을 농지법 제4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
○○읍·면 ○○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이장 주 소 :
성 명 : (인)

첨부서류 : 1. 후보자(임차인대표) 인적사항 및 영농계획 1부
2. 후보자(임대인대표)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